

1. 개정이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0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지침의 통보(안 제45조의2 제1항)

- 1)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구체적 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기준을 포함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계위 제출(안 제45조의2 제3항)

- 1)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고시 지역의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31일까지 낙동강수계관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통보(안 제45조의2 제4항)

- 1)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고시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 ~ 8.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이하 “고시 지역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상생협력사업 계획의 기본 방향
2. 지역상생협력사업의 구체적 종류
3.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선정 및 사업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4. 지역상생협력사업 계획 변경, 사업비의 집행,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시 지역의 시장·군수는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고시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5조의2(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침을 정하여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이하 “고시 지역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지역상생협력사업 계획의 기본 방향</u> <u>2. 지역상생협력사업의 구체적 종류</u> <u>3.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선정 및 사업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u> <u>4. 지역상생협력사업 계획 변경, 사업비의 집행,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u>

5. 그 밖의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시 지역의 시장·군수는 제1
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상생협
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법 제
36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고시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